NOTICE OF INTENT (서면통지의사통지).

통지인. 미국인 투자자(美國) WON TAE. YOON (윤원태), [redacted]

피 신청국: 대한민국. 국제투자분쟁재판소. S. Korea.

위 통지인은 외국인투자자 지위에서 국제투자분쟁재판기관(ICSID. UNCITRAL 등) 중재에 의한 일정기간 숙려기간 의사를 피 신청국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한 US-Korea FTA Article. 11.16.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 합니다.

신청인의 성명 주소는 위 통지인과 같습니다.

현정하는 내용

1. US-Korea FTA 제11.5조 MST (최소기준대우) 규정 의 내용인. "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및 보호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부여해야할 국제관습법의 최소기준대우로서, 민사, 형사, 기타 행정 소송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 을 거부하지 않을 의무 의 위반 사건.

2. 위 제1항 청구의 배경, 사실적 근거.

신청인은 2015. 8. 25. 피신지방 제1심 판결인 [redacted]의 판결문 선고 를 받은 원고로서 이 사건이 두번째 판결 선고로서. 판결과 함께 선고과 동시에 확정된 재판 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무부 에게 돈을 주고 항소해서. 동 사건기록을 접수 받기로 해놨다. 항소법원에 소장접수 시 담당판사 조사등을 거쳐 하여 상위한 변과 신청인이 피소하는 재판으로 하였으며 이 재판이후 여러번의 상고, 재심, 신고 를 제기 하였으나 제1심 [redacted]의 두번째 판결문을 이해하는 법원, 재판부 그누구 하나 없었다. 심지어 "두번째 판결 선고는 판결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" 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? 나는 여기 판사 10여년 해오면서 들어본적이 없는데……" 라고 말하는 신고 제기 제1심 담당판사 [redacted]가 한 말이다. 자. 법원 담당자이 이러는데 제1심 [redacted] 사건이 2015. 8. 25 판결선고 와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는 두번째 사건의 판결문이었고 대법원 기록에도 기재 되었으므로. 항소심 재판부 [redacted] 3인의 법관은 두번째 판결의 선고 결과을 보았고. 소송기록이 기재, 기록 되었음을 인지 하였고 한 판결문이었으며 여기에 항소심에서 또한 상대방 변호사 [redacted]의 명백 항소심의 선행하게 악의로 되었음은 위 법원. 사실적 근거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두차례, 변호사가 기록자료를 위조 제출 하여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고 항소인으로 이자들이 Arbitrary. Discriminately. Capriciously 신의를 저버리며 예정대로 따른 당한 위법. 부당한 재판행위는 US-Korea FTA 제11.5조 Fair Equitable treatment 공정 규정 이 포함하고 있는 최소기준 대우에서 적법절차 에 따른 재판을 거부하지 않음을 의무 와 정면 배치 된다. 또한, 국가배상법상, 재판이 선행사건. 국제재판 관할에서 관할상 제1심 담당 판사 (예규 98호 제1항 참조 위반)이 되었으며. 당연히 제척 또는 기피 사항인 관할, 기록위조 (기판력의 위조재와 기록 제출이 있어야 심리 기각 요건 아닌가) 에 대한 의심 없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이라서 이 명백히 이치나게 소송을 회피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(법무부가 피고사건을 접수 하여 재판이등으로 지연하여 위기 원인에 대하여 그대로 기각. 또한 사정변경이 유리로 피소사유가 없는 표지 재판이었다고 기록을 다 보는 사정 : 피고라야 판결문도 그렇게 복사해 놓은 것만 전자의 반사항의 존재이다) 있는 경우로써 법원 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 하는 것 들을 하였다.

3. 구제방법.

피고가 존재하고 잘못이 있음을 인정 하였다면 재판하는 자의 독립적 오판 을 면책 해주지 않을 것이다. 대법관 대법원 등은 국가로이고 부분지방법원은 아니지만 법원 사무 보는 자도 제1심 [redacted]의 판결문에는 판결문을 써야해 라고 서명하자. 또한 내용을 읽고 완벽한 전법 절차에 의해 발급 하여야 할 에도 그런 [redacted] 항소심에서 또다시 제1심이 잘못되었으므로 정정문을 내어주라는 자의적 처분. 잘못 지적하여서도 환송으로 마무리하는 위법은 저질렀고 제1심 판결문 부터의 판사 [redacted]은 은 위 판결 [redacted] 와 다름없이 정정문 부터의 소를 기각한 사실에 비추어 Gross S. Korea 에 게 큰 손해를 입혔다. 손해는 그것 외에도. 특별손해까지 해서. 일반손해는 그외에도 특별손해는 10억불 (이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대법원에서 법관들이 조작과 판결 을 위법행위로 사건의 권리, 재산의 보호 와 공평한 재판의 절차적 정의(과오없는)의 모든 법의 이 참혹 망한 여지 자체가 이러한 결과에도 사라진것 이기때문이다). 이며 입증방법은 별도 첨부 된 것 이다.

입증:

[redacted] 판결문서 (기록에 있는 것) [redacted]. 이외 7~8개 민사 소송 서류. 정정문 부터의 소. 등 법원의 기록.

* 소송기록 열람자 들이 지적의 내용 하여 사실으로 의도하는 의도하는 하게 하거나 사실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것으로 이점 도와준 이라고 주장 기각되었다면 또한 입증 된다면. 또한 행위에 대한 대체배상을 위해 연방 법원의 도움을 받으도록 하였다.

* [redacted] 아니 [redacted] 때고 는 두번째 담당자로서 합당한 담당자 적격이 없는 자 아닌가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으로 기록 꺼리 (무죄)를 만들었나. 법이나 위조를 묵인 한다는 것은 법원의 직무로서 이제 지난 이사건 까지 기다려오다도 이루지못 한다는 것이므로 배척 행위를 구성하는 Mens Rea. 와 Actus Reus 를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. 담당인들이 범죄 한 것이다.

법무부. 국제법무실.

2019. 12. 23. 통지자 WON YOON [redacted]